

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제정 2010.12.01 1차 개정 2012.02.10
2차 개정 2014.08.08 3차 개정 2014.10.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직무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,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2.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위원은 본 대학 교무위원 및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하며 관련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
2. 입학 모집요강 심의
3. 입학 합격사정
4. 기타 입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5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입시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입학전형관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.

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,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